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98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채현일 · 김태선 · 김태년
박성준 · 김병주 · 정준호
허성무 · 진선미 · 조승래
박민규 · 박상혁 · 조정식
의원(12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며,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 조정 및 범위 정비(안 제3조제1항)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변경(안 제4조제1항)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을 종전의 주민소환투표 발의일에서 주민소환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함.

다. 격리자등에 대한 거소투표 제도 도입(안 제4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에 대한 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함.

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 조정(안 제7조제1항)

1) 종전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자격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일 현재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함.

2)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려는 경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수를 종전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선거구시·도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선거구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마.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신설(안 제9조)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 방식 확대(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만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맞추어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등 비대면 방식의 서명요청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사.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변경(안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1)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은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함.

2)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의 전날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 전날까지로 변경함.

아.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및 개표요건 조정(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1) 종전에는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소환투표결과로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소환투표결과로 확정되도록 함.

2) 종전에는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개표요건을 조정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제1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발의일”을 “주민소환투표일 전 22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8조제4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까지”를 “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홍보·제도”를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소환투표권자”를 “제3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소환투표 참여·투표방법”을 “주민소환투표의 시기·대상·방법 및”으로, “제도·홍보를 실시”를 “정보를 제공”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제1항에 따른 서명인 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기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와 제1항에 따른 서명인 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주민소환투표 청구일 현재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의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이하 “기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명)	서명인 수(명)
5만 이하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5만 초과 10만 이하	7,5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3)
10만 초과 50만 이하	14,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1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1)
50만 초과 100만 이하	58,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9)
100만 초과 500만 이하	103,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10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7)
500만 초과	383,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0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5)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분의 1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만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2.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 각각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수

③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관할구역 및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만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2.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관할구역 및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 각각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수

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소환청구인대표자”로, “자는 대통령령이”를 “사람(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소환청구인서명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제8항·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제7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⑦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제5항에 따른 서명에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소환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제7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10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라 전자소환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

대표자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소환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서명(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0조, 제11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6조에서 같다) 요청, 소환청구인서명부(전자소환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라 한다)는”을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에 따른”으로, “선거일전”을 “선거일 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을 “서명요청 또는 방해 활동을 하거나 이를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또는 방해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1.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
 2. 구두 설명
 3.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전송.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같은 메시지의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하는 경우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 또는 동영상 등의 게시
 5.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다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정한다.
- ⑤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제4항제3호의 방법으로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경우 서명요청 정보의 전송제한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및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각각 “소환청구인대표자등”으로, “선거운동”은 “서명요청”으로, “선거운동정보”는 “서명요청 정보”로 본다.
- ⑥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주민등록 등 전산자료의 제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① 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주민소환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61조”를 “제59조제2호 및 제3호, 제61조”로, “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을 “제82조의4 및 제82조의7”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로 한다.

- ①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분의 1”을 “4분의 1”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집행·회계 및 반환”을 “납부기한·집행·회계·반환 및”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를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2조(제8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을 ““청구인대표자”는”으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주민투표안”은 “주민소환투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은 “제7조”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시·도지사”로, “자치구·시 또는 군”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으로”를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으로, “청구인서명부”는 “소환청구인서명부”로, “서명”은 “서명(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제9조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전자청구인서명부”는 “전자소환청구인서명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보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시·도”는 “시·도지사”로, “시·군·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으로, 같은 조 제7항 중 “제9조제2항”은 “제7조”로”로 하며,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본다.”를 “제26조제3항 중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은 “투표를”로 본다.”로 한다.

제28조 중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거마(車馬)”를 “교통수단”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

은 항에 제1호의2·제1호의3·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을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로 한다.

1의2. 소환청구인대표자로서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명요청을 한 자”를 “서명요청 또는 방해 활동을 하거나 이를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또는 방해 활동에 관여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제2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을 “사전투표사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제261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를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10조의3의 규정”을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7항·제8항·제10항·제1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의 공표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환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 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4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거주자 중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과 제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의 절차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u>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u>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 ----- -----<u>주민소환투표일 전 22일</u>----- ----- -----. ② ----- ----- -----<u>제38조제4항 각 호 (제6호는 제외한다)</u>----- ----- -----. ③ ----- ----- ----- -----

현행	개정안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u>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인대표자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까지</u> 하여야 한다.	----- ----- -----. -- <u>제9조에 따른</u> -- ----- <u>제12조에 따른</u> - ----- ----- ----- ----- ----- ----- ----- <u>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u> -----.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u>홍보·제도</u>)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주민소환투표권자</u> 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u>정보제공</u>) ① ----- <u>제3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④ ----- ----- ----- <u>주민소</u>

현행	개정안
주민소환투표 참여·투표방법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u>제도·홍보를 실시</u>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u>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u> 1.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u>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	환투표의 시기·대상·방법 및 ----- ---<u>정보를 제공</u>----- --.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u>주민소환투표 청구일 현재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의 제4항에</u>

현행	개정안														
의 10 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3. 지역선거구시·도회의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따라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이하 “기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table border="1"> <tr> <th>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명)</th><th>서명인 수(명)</th></tr> <tr> <td>5만 이하</td><td>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td></tr> <tr> <td>5만 초과 10만 이하</td><td>7,5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3)</td></tr> <tr> <td>10만 초과 50만 이하</td><td>14,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1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1)</td></tr> <tr> <td>50만 초과 100만 이하</td><td>58,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9)</td></tr> <tr> <td>100만 초과 500만 이하</td><td>103,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10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7)</td></tr> <tr> <td>500만 초과</td><td>383,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0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5)</td></tr> </table>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명)	서명인 수(명)	5만 이하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5만 초과 10만 이하	7,5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3)	10만 초과 50만 이하	14,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1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1)	50만 초과 100만 이하	58,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9)	100만 초과 500만 이하	103,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10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7)	500만 초과	383,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0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5)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명)	서명인 수(명)														
5만 이하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5만 초과 10만 이하	7,5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3)														
10만 초과 50만 이하	14,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1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1)														
50만 초과 100만 이하	58,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9)														
100만 초과 500만 이하	103,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10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7)														
500만 초과	383,000 +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0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현행	개정안
<u>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u>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u>	<u>·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u> 1. <u>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분의 1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만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u> 2. <u>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 각각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수</u> ③ <u>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u> ④ <u>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u> ⑤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u>	1. <u>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관할구역 및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만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u> 2. <u>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관할구역 및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 각각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수</u> ④ <u>제1항에 따른 서명인 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u> -----. ⑤ ----- ----- <u>기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와 제1항에 따른 서명인 수-----</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① <u>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u> (이하 “<u>소환청구인대표자</u>”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u>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u>	<u>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u> ④ <u>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u> ⑤ <u>소환청구인대표자</u>----- ----- ----- ----- -사람(이하 “<u>소환청구인대표자들</u>”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u>소환청구인서명부</u>-----

현행	개정안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 5. (생략)	다) 요청, 소환청구인서명부(전자소환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 ----- ----- -----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전----- -----. ② ----- -----서명요청 또는 방해 활동을 하거나 이를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또는 방해 활동----- --.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u>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u> <신설> <신설>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u>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u> 1. <u>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u> 2. <u>구두 설명</u> 3. <u>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전송.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같은 메시지의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하는 경우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 또는 동영상 등의 게시
<u><신 설></u>	5.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다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정한다.
<u><신 설></u>	⑤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제4항제3호의 방법으로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경우 서명요청 정보의 전송제한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및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각각 “소환청구인대표자등”으로, “선거운동”은 “서명요청”으로, “선거운동정보”는 “서명요청 정보”로 본다.
<u><신 설></u>	⑥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u><신 설></u>	제11조의2(주민등록 등 전산자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 <u>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 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 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 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 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u> <u><신 설></u>	의 제출)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 조제2항에 따른 소환청구인서 명부의 심사를 위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전산자료를 요 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 <u>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제2항 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발의일 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 일로 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 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주민소환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소 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 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생략)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③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발의일----- ----- ----- -----제1항에도----- ----- -----.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현행	개정안
① <u>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① <u>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 ----- -----

현행	개정안
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u>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 보를 전송하는 행위</u>	2. ----- ----- <u>주민소환 투표운동정보</u>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소환은 <u>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 수의 3분의 1</u>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 으로 확정된다.	① ----- <u>주민소환투표권 자 총수의 4분의 1</u> ----- ----- ----- ----- -----.
②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 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u>3 분의 1</u> 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 표를 하지 아니한다.	② ----- ----- <u>4 분의 1</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 ①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의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 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 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	제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 ① ----- ----- ----- -----

현행	개정안
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u>특별시·광역시·도</u>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u>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산출기준·납	----- ----- ----- ----- ----- -----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를</u>----- ----- ----- -----. ③ <u>제1항에 따른</u>----- -----

현행	개정안
부절차·납부방법·집행·회계 및 반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u>납부기한·집행·회계·반환 및</u> ----- ----- -----.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 다), 제18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주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주민투표청구서”는 “주민소환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 ----- ----- ----- <u>주민투표법</u> 」 제3조 제2항, 제4조, 제12조(제8항은 제외한다)- ----- ----- --. ----- ----- ----- ----- ----- ----- -----“ <u>청구인 대표자</u> ”는 ----- ----- ----- ----- -----

현행	개정안
투표청구서”로, “<u>청구인대표자 증명서</u>”는 “<u>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u>”로, “<u>주민투표안</u>”은 “<u>주민소환투표안</u>”으로, “<u>지방자치 단체의 조례</u>” 및 “<u>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u>”는 각각 “<u>대통령령</u>”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은 “제7조”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u>특별시·광역시 또는 도</u>”는 “<u>시·도지사</u>”로, “<u>자치구·시 또는 군</u>”은 “<u>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u>”으로, 같은 법 제26조제3항 중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u>”는 “<u>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u>”으로 본다. ② (생략)	-----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으로, “<u>청구인서명부</u>”는 “<u>소환청구인서명부</u>”로, “<u>서명</u>”은 “<u>서명(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u>”으로,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제9조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u>전자청구인서명부</u>”는 “<u>전자소환청구인서명부</u>”로,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u>” 및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u>”는 각각 “<u>대통령령</u>”으로 보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u>시·도</u>”는 “<u>시·도지사</u>”로, “<u>시·군·구</u>”는 “<u>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u>”으로, 같은 조 제7항 중 “제9조제2항”은 “제7조”로----- -----제26조제3항 중 “<u>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u>”은 “<u>투표를</u>”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조(벌칙) ----- -----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 -----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 ----- ----- <u>5천만원</u> ----- -----.
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 <u>거마(車馬)</u>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1. ----- ----- ----- ----- ----- ----- ----- ----- ----- ----- ----- <u>교통수단</u> ----- ----- ----- ----- -----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제30조(벌칙) ① ----- -----

현행	개정안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u>3천만원</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소환청구인대표자로서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u>
<u><신설></u>	<u>1의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하게 한 자</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5.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u>
<u><신설></u>	<u>6.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	② ----- ----- ----- <u>2천만원</u> -----

현행	개정안
에 처한다. 1. (생략)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제31조(벌칙) 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 --- <삭제> 제32조(벌칙) ----- ----- -----1천만원----- -----.

현행	개정안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u>서명요청을 한 자</u>	1. ----- <u>서명요청 또는 방해 활동을</u> <u>하거나 이를 기획·주도하는</u> <u>등 서명요청 또는 방해 활동</u> <u>에 참여한 자</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 <u>다.</u>)----- ---
제33조(벌칙)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 ----- ----- ----- ----- <u>1천만원</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 태료) ① · ② (생략)	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 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 ----- -----.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 <u>부재자</u> <u>주민소환투표사무원</u> ·개표사 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 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	1. ----- <u>사전투</u> <u>표사무원</u> ----- ----- -----

현행	개정안
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 ----- ----- --제261조제10항 및 제11항-- -----.
제36조(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① (생략)	제36조(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사이버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시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③ 제1항 및 제2항----- ----- -----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의3----- ---. ----- ----- ----- -----

현행	개정안
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 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 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 시사무”로 본다.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